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1244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6.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22. 6. 20. 접수 제67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울산중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53916호 양수금 사건의 2007. 6. 9. 확정된 판결에 기한 '63,920,218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2. 6. 2.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와 C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6. 2.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22. 6. 20. 접수 제67174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할 당시 C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그 당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C과 피고 사이에 2007. 10.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 중 C의 상속분인 1/2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6716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7. 5. 25. C에게 송달되었고, 2017. 6. 9.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2. 6. 20. 접수 제67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별지

부 동 산 목 록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울산광역시 중구 E

지 목 : 대

면 적 : 208.7m²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 울산광역시 중구 E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F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22.15m²

2층 121.15m²

3층 112.20m²

부속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2.6m²

